



도민이 중심  
신뢰받는 의회

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23. 3. 17.(금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교육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박재주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23년 3월 7일

○ 회부일자: 2023년 3월 9일

3. 제안 이유

○ 충청북도 내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지역 사회와 연계한 공공스포츠클럽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○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안 제2조)

○ 교육감 등의 책무(안 제3조)

○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○ 학교스포츠클럽등에 대한 지원 사항(안 제5조)

○ 스포츠클럽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○ 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 및 종목연계형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 등을 위한 사항(안 제7조 ~ 안 제8조)

○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## 5. 검토 의견

### 가. 조례 제정이유

- 선수 인권 보호, 지도자 처우 개선,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학교 엘리트 체육분야 구조를 혁신하기 위하여 2019년 ‘스포츠혁신위원회<sup>1)</sup>’가 발족되었음. 이후 2019년 2월부터 1년간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▲ 스포츠인 인권 보호 ▲ 선수 육성 시스템 개선 ▲ 스포츠 공정문화 정착 등을 주요내용으로 모두 7차에 걸쳐 52개 과제를 권고했으며,
  
- 이 가운데 스포츠혁신위원회의 2차 권고문(2019.6.4.)에서는 학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를 위한 **6대 분야 권고<sup>2)</sup>**를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<sup>3)</sup> 등 인권 보장을 토대로 체육특기자 제도, 학생운동부 시스템, 전국소년체육대회 등의 개혁 및 혁신적 전환을 추진키로 함.  
또한,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스포츠 시스템과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수립·실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.

1) 「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」(문화체육관광부훈령, 2019. 4.12. 제정)에 따라 체육 분야 구조 혁신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기구로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추진 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권고, 이행 실적 점검 등의 역할 수행

2) ‘스포츠혁신위원회 2차 권고안’ 주요내용 : ①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② 체육특기자 진학 제도 개편 ③ 학교운동부 운영 및 관리 개선 ④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 개선 ⑤ (일반)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 ⑥ 전국스포츠대회 개편 등

3) ‘교육부·문체부, 체육 현장 목소리 반영한 새 정부안 발표’ (2023.1.19./ 연합뉴스 등 보도)  
: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‘스포츠혁신위원회’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, 2023년부터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, 중학교 35일,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 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 선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.

- 이에 따라, 충청북도 내 학교스포츠클럽 기반 조성 및 지원을 통한 학생선수 저변 확대로 초·중·고-대학-전문·생활체육으로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스포츠클럽과 연계한 엘리트 선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학교체육의 저변을 넓히고 선진화된 방향으로의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인 상황임.
- 특히, \*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단일학교에서 선수 수급이 어려운 학교운동부를 비롯해 학교 훈련장 설치가 어렵거나, 지역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종목에 대해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형 또는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의 전환이나 위탁운영을 지원할 경우, 학교스포츠클럽등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**\* 충북 도내 축구, 야구 종목 운영 현황 (2022.8 기준)**

종목	학교 안		학교 밖	
	학교	선수 수(명)	클럽명	선수 수(명)
축구	덕성초	18	청주 FCK외 23클럽	719
	청남초	11	최강 FCU 12외 3클럽	225
	교현초	16	FC기적유소년축구클럽	300
	제천중앙초	9	진천FC유소년축구클럽외 3클럽	244
	대성중	47	옥천유소년FC	35
	신명중	27	중평유소년클럽	20
	충주남산초	15		
	예성여중	32		
	<b>소계</b>	<b>175</b>	<b>소계</b>	<b>1,543</b>
야구	서원초	10	청주이글스 U-13야구학교	26
	석교초	43	청주시리틀야구단	34
	우암초	2	청원구리틀야구단	24
	세광중	48	서원구리틀야구단	26
	청주중	14	홍덕구리틀야구단	21
	현도중	11	충주시리틀야구단	17
			청주이글스 U-15야구학교	25
	<b>소계</b>	<b>128</b>		<b>173</b>
<b>합계</b>	<b>374</b>		<b>1,716</b>	

※ 자료제공 :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

## 기존 학교운동부 VS 공공스포츠클럽 비교

기존 학교운동부	구분	공공스포츠클럽
전문체육	팀 성격	전문체육 + 생활체육
A학교 학생선수	선수구성	A학교 학생선수 + 일반학생 및 동일 지역 내 타 학교 일반학생
학교 소속 지도자	지도자	비영리 민간단체(법인) 스포츠클럽 소속 지도자
A학교 운동장	훈련시설	학교 또는 지자체 시설 사용

- 또한,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사회 및 전문 스포츠클럽과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바,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(목적)에서 충청북도 내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.

#### 스포츠클럽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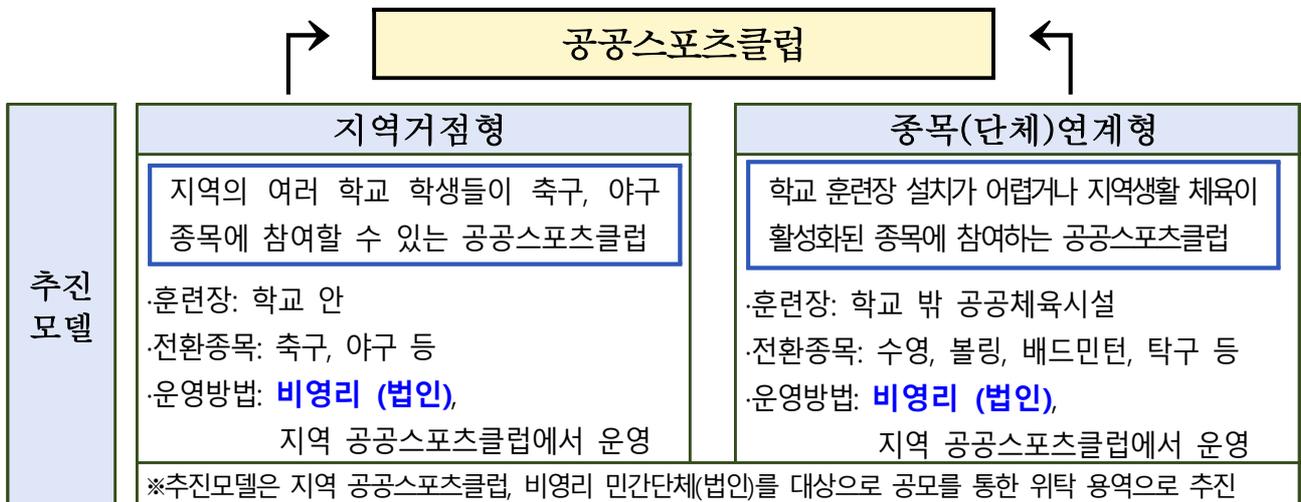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‘스포츠클럽’, ‘학교스포츠클럽’, ‘공공 스포츠클럽’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. 특히, ‘공공스포츠클럽’은 학생선수 또는 학생선수를 희망하는 학생들로만 구성되어, 비영리 목적의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학교 밖 구성원에 대한 행정적·

재정적 지원이 자칫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그러나, 이러한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스포츠클럽 시스템을 먼저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서 불법 찬조금 모금 및 횡령 의혹이 불거지는 등<sup>1)</sup>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,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단체에 대한 선정에서부터 지도·감독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### < 중복형 공공스포츠클럽 모델 >



○ 안 제3조(교육감 등의 책무)에서 학교스포츠클럽 및 공공스포츠클럽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다양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규정함.

○ 안 제4조(기본계획)에서는 교육감이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 학교스포츠클럽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.

1) ‘비리 없애려 도입한 학교 공공스포츠클럽…또 불거진 불법 찬조금·횡령 의혹’ : 22. 5. 14. (TV조선 보도)

- 안 제5조(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)에서 학교스포츠클럽등의 활동과 관련한 학교체육시설 사용 및 확충 지원 등 학교스포츠클럽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지원 범위를 규정함.
- 안 제6조(스포츠클럽지원센터)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스포츠클럽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 이에 따라, 스포츠클럽지원센터는 학교스포츠클럽등 운영에 대한 컨설팅 및 정보 제공을 비롯해 ‘학교로 찾아가는 스포츠교실’ 운영 지원과 학교스포츠클럽 등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담당하도록 함.
- 안 제7조(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 전환)에서는 학교운동부를 지역거점형 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 다양한 소속과 수준의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음.
- 안 제8조(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운영)에는 학교 자체 육성이 어려운 학교운동부 종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 밖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종목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신체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공개모집을 통한 사무 위탁과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제10조(협력체계 구축)에서는 교육감이 공공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체육단체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## 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학생선수 육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공스포츠클럽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, 「법령 입안·심사 기준」과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 및 집행청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## [ 참고 ]

### 타 시도 교육청 조례 제정 현황

연번	기관	조례명	제정일
1	강원	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	2021.09.24
2	경기	학생스포츠활동 지원 조례	2021.05.20
3	경남	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	2022.04.07
4	광주	학생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	2021.02.26
5	부산	학교스포츠클럽 및 전문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	2020.07.08
6	전남	지역연계 스포츠클럽 운영 및 지원 조례	2022.12.22
7	전북	스포츠클럽 지원 등에 관한 조례	2021.09.29
8	제주	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2020.07.15